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4.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1. 개정이유

기상 및 기후 여건이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기후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확대(제8조제3항)

3. 주요토의과제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명”을 “2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 <u>21명</u>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